

긴급입찰 사유서

1. 물품개요

- 물 품 명 : 미래모빌리티 주행기능을 모사한 전자파잔향실(RC) 평가시스템
- 납기기간 : 계약 후 730일 이내
- 소요예산 : 5,8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 해당 물품은 실차 전자파잔향실(RC) 시험 평가 시설로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UN Regulation 10 등 글로벌 차량 전자파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으며, 2029년부터 전자파잔향실(RC) 시험법이 의무 적용(강제화)될 예정으로 해당 인프라의 도입이 시급함
- 현재 국내 미래차 산업은 국가 주도의 집중 육성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미래 모빌리티 실차 평가용 전자파잔향실 인프라는 국내에 전무한 실정
- 당해년도 협약된 과제로서 1차년도 사업기간이 짧아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의 조기 선정 및 사업착수가 필요함 (7월 시작 과제)
- 본 사업의 대부분의 직접비는 장비구축비용으로 사업비의 59%를 차지하며,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반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당해연도 수행기간동안의 사업목표 달성 긴급조달을 통해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1조 제10항(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97호)(20201119)

제11조(직접비 사용) ①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 한다.

② 직접비 중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원래 사업계획에 없는 신규 구매

2. 원래 사업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구매

3. 원래 사업계획상 예정된 구매의 철회 또는 취소(일괄·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원래 계획된 장비·시설에 대해 해당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③ 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해당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 사 제 >

⑦ 최종연도에 구입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이하 "장비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단, 장비 구입 후 발생한 잔액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최종 잔액은 반납해야 한다.

⑨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당해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⑩ 비영리 수행기관이 당초 산정한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넘는 부분은 반납해야 한다.

⑪ R&D 샌드박스 과제 수행기관은 직접비 내 세목 간 예산 변경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⑫ 그밖에 직접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 및 별표 4를 따른다.

연구책임자 : 최 범 진 (인)